■ 민족문화연구 제79호(2018.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65-194.

조선후기 王朝禮와 私家禮의 변주
—國恤 중 사가례 논의를 중심으로—

김윤정*

목 차

1. 머리말
2. 『國朝五禮儀』 戒令條와 사가례 시행
3. 18세기 사가례 논의와 『國朝喪禮補編』
4.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후기 국휼은 사대부의 가례 실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吉한 의례인 관례·혼례·제례의 시행은 국휼로 인한 슬픔의 표현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상례 역시 왕에 대한 尊尊과 부모에 대한 親親의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국조오례의』 계령조에는 혼인과 제사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16-17세기 사대부의 예학적 지식에는 어긋나는 측면이 많았다. 혼인의 경우, 주자의 「군신복의」를 토대로 관품에 따라 차등을 두고자 했다. 그러나 官制의 차이로 인해 「군신복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고, 『국조오례의』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문적인 논의에 그칠 뿐이었다. 제사의 경우, 국가의 제사를 정지하는 상황에서 사가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명분이 중시되었다. 자체적으로 시제를 금지하고 기제와 묘제를 간략히 지내는 등 평소의 行禮와는 차이를 보이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는 국휼로 인한 변례의 상황에서 사대부들이 스스로의 行禮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규제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8세기 『국조상례보편』의 편찬은 사가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사대부의 예학이 왕조례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혼인의 경우 숙종상을 계기로 「군신복의」에 따른 상복 개편이 이루어지고, 허혼의 차등화가 규정되었다.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조선의 현실에 맞추어 내용이 수정되었고, 대상·내상·소상·소내상에 따른 구분이 명시되었다. 상례의 경우 장례는 국휼 중이라도 그대로 시행되었는데, 喪祭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의 편찬과정에서 영조는 상례란 효의 실천임을 강조하며 상제를 그대로 허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대부의 예설과 인현왕후상 이후의 전례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1720년 숙종상에서 사가의 제사는 국가가 규제하지 않고, 다양한 예설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행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런데 1758년 『국조상례보편』에서는 국휼 졸곡 전 기제와 묘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國制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의 차이를 두고 새로운 차원의 예학 논의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國恤, 戒令, 君臣服議,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

1. 머리말

국휼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인 죽음에 대해 모든 臣民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의 국휼은 국가 차원에서 거행되었고, 왕의 신하로 관념화된 사대부에게는 君臣 간 忠의 의리를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국휼은 사대부의 家禮 실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吉한 의례인 관례·혼례·제례의 시행은 국휼로 인한 슬픔의 표현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상례 역시 왕에 대한 尊尊과 부모에 대한 親親의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17세기 예송에서는 왕실 내부의 존존과 친친의 문제가 첨예하게 갈등하였고, 사대부 관리와 학자들이 이 논쟁에 대거 참여하였다. 사대부 예학이 왕조례에 반영되면서 전개되는 독특한 논쟁과 의미에 대해서는 예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 반면, 국휼 중 사대부들이 가례를 행하는

1) 17세기 예송논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예송을 친친과 존존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俸珪, 「禮訟의 철학적 함의 : 17세기 喪服論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과정에서 발현되는 존존과 친친, 公과 私의 문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國朝喪禮補編』 戒令條의 혼인금지 조항을 金集의 「古今喪禮異同議」와 비교하는 접근이 이루어졌지만,[2] 이러한 논의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측면까지 연구가 확장되지는 못했다. 이에 국휼 중 私家의 혼례 및 상·제례에 대한 예학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18세기 『국조상례보편』을 통해 國制로 성문화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3]

먼저 『국조오례의』 戒令條에 대한 인식과 국휼 중 사가의 혼인과 제사 시행을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에 주목하였다. 15세기 편찬된 『국조오례의』의 계령조에는 이미 국휼의 졸곡 전에 혼인과 제사를 정지하는 금령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예학이 발전하면서, 사대부들은 『국조오례의』의 규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혼인의 경우 주자의 「군신복의」를 조선에 적용하고자 하였고, 제사의 경우 「군신복의」에 규정이 없었으므로 古禮와 조선 학자들의 예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16-17세기에 걸친 예설 논쟁은, 국휼로 인한 變禮의 상황에서 사대부 자체적으로 명분에 맞는 가례의 실천을 고민한 것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규제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18세기 국휼 진행과정에서 사가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와 규제가 시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장이 朝廷으로 확대되었고, 사대부 관리와 학자들이 이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國制의 개정과 보완을 담당하였다. 사대부의 예학적 지식이 반영되면서, 보다 구체화·세분화된 규정이 『국조상례보편』에서 완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축적된 사대부 예학의 실천

제9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8; 張東宇, 「茶山 禮學의 硏究 : 『儀禮』 「喪服」과 『喪禮四箋』 「喪期別」의 比較를 中心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 李元澤, 「현종대의 복제논쟁과 공사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2)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硏究 :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10, 133면; 이봉규, 「喪禮 爭點을 통해 본 『國朝喪禮補編』의 志向」, 『동양철학』 제36집, 한국동양철학회, 2011, 94-96면.

3) 私家는 주로 士大夫家를 의미하고, 私家禮는 사대부 집안의 家禮인, 관혼상제이다. 조선시대 학자들이 주로 '私家'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에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또한 당시에 관례는 혼례와 같은 층위로 인식되면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과 왕권의 공공화 의도가 만들어낸 변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대부들의 유교적 예치 이념이 국제에 반영되었다는 점은 18세기 조선예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2. 『國朝五禮儀』 戒令條와 사가례 시행

『국조오례의』의 계령조는 국휼 시 관리와 백성이 지키고 행해야 할 일들을 규정한 것으로, 크게 병조·예조·이조의 임무로 구분되어 있다. 병조에서는 여러 衛를 통솔하여 안팎의 문 및 宿衛해야 할 곳을 지켰다. 예조에서는 모든 喪事에 관한 일을 의정부에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 관서에 공문을 보내 여러 직무들, 즉 沐浴·飯含·襲·斂·成殯·成服·治椑·治葬과 제사정지[停祭]·음악정지[停樂]·시장중지[巷市]·혼인금지[禁嫁娶]·도살금지[禁屠殺] 등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조에서는 殯殿·國葬·山陵 3都監을 설치하고, 제조와 낭청 등 각 도감의 관원 및 시릉관·수릉관과 교도돈체사를 임명하여 국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4]

이 중 사대부의 가례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예조의 업무 중 혼인과 제사에 대한 금지 조항이었다. 혼인의 경우, 小註에 "卒哭 후에는 가취를 허락하되, 3일 간 借吉한다."라고 하여 졸곡 후 3일간 임시로 길복을 입고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제사의 경우, 소주에 "초상 때부터 卒哭 때까지 大·中·小祀를 모두 정지하게 한다. 成殯 후에는 다만 사직에만 제사지낸다."라고 하여 사직 제사를 제외하고는 역시 졸곡 이후에 제사가 허용되었다.[5] 이러한 세부 조항은 국휼의 졸곡을 기점으로 혼인과 제사가 가능했음

4) 「戒令」, 『國朝五禮儀』 卷7 凶禮. "兵曹勒諸衛, 謹守內外門及應宿衛之所. 禮曹凡干喪事, 報議政府, 行移中外, 各供其職, 如沐浴飯含襲斂成殯成服治椑治葬停祭【自初喪至卒哭, 竝停大中小祀, 殯後唯祭社稷. 若內喪在先, 則殿下服盡後, 行祭如常.】停樂【三年唯大祀, 卒哭後用樂. 若內喪在先, 則卒哭後凡祭, 皆用樂.】巷市【五日.】禁嫁娶【卒哭後許嫁娶, 借吉三日.】禁屠宰【卒哭前.】之類. 吏曹報議政府,【若內喪在先, 則啓聞.】設殯殿國葬山陵三都監. (…) 三都監都提調, 以左議政爲之, 稱總護使, 總治喪葬諸事. 以宗親功臣中二品以上, 爲守陵官, 內侍三品以上, 爲侍陵官. 又以漢城府判尹, 爲橋道頓遞使, 掌橋梁道路修治事."

5) 단, 왕비상이 왕의 大喪보다 먼저 있는 경우[內喪在先]에는, 졸곡이 아닌 왕의 상복이 다한[服盡] 후에 제사 지내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도록 하였다. 조선전기 내상재선의 경우, 왕은 30일간 포대를 착용한 후 벗는 것으로 복을 마쳤으므로 이후 제사 역시 거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의 삼년복에 해당하는 대상과 내상의 경우는 모두 졸곡을 기점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을 보여주는 것이다.

졸곡은 '곡을 그친다'는 의미로, 졸곡 이후에는 수시로 하던 곡을 그치고 아침저녁에만 곡을 한다. 또한 '成事'로서 상사가 마무리되는 길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凶에서 吉로 나아가는 상례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6] 조선초기 국휼 정비과정에서 이러한 졸곡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세종대 원경왕후 국상에서 졸곡은 權道로 상복을 벗는 시점으로 간주되었고 혼인과 제사를 재개하는 시점으로 명시되었다.[7] 졸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世宗實錄』「오례」를 거쳐 『국조오례의』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러나 규정에 대한 해석과 실천의 과정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들이 필요했다.

먼저, 혼인금지 조항은 주자의 「君臣服議」와 다르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다.[8] 처음 논의될 때부터 許稠는 「군신복의」를 근거로 혼인금지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7등급으로 구분된 「군신복의」와 달리 5등급으로 나누어, 1개월 뒤에는 軍民에게, 3개월 뒤에는 관직이 없는 양반 자제들에게, 졸곡 뒤에는 4품 이하에게, 小祥 뒤에는 3품에게 3일간 借吉을 허용하고, 2품 이상은 모두 禫祭를 지낸 뒤에 혼례를 행하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등없이 모든 신민에게 졸곡 후 혼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9]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계속되었다. 세종상에서 안평대군의 아들 李友直의 혼인 허용 여부에 대해, 예조는 허조의 주장을 근거로 2품인 이우직의 혼인은 담제 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결정된 계령조를 따라야 하지만 이우직은 세종의 친손이

---

6) 陳澔, 「檀弓下」, 『禮記集說』 卷4. "卒哭曰成事者, 蓋祝辭曰哀薦成事也. 祭以吉爲成, 卒哭之祭, 乃吉祭故也."

7) 이전 국휼에서 山陵이나 虞祭를 기준으로 혼인·제사 등을 금지한 것과 달리, 졸곡이 금제를 규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硏究』, 서울대 출판부, 1996, 203면.

8) 朱熹, 「君臣服議」, 『朱子大全』 卷69. "且以婚姻一事言之, 則宜自一月之外許軍民, 三月之外許士吏, 復土之後許選人, 祔廟之後許承議郎以下, 小祥之後許朝請大夫以下, 大祥之後許中大夫以下, 各借吉三日. 其太中大夫以上, 則並須禫祭然後行吉禮焉. 官卑而差遣職事高者從高, 遷官者從新, 貶官者從舊, 如此則亦不悖於古, 無害於今, 庶乎其可行矣."

9) 『世宗實錄』 卷16 세종 4년 7월 14일.

므로 『가례』의 "자신과 주혼자에게 기년 이상의 상이 없어야" 혼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손자가 조부에게 입는 기년복을 마친 후에 혼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10]

1608년 선조 국휼에서 예조는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公卿과 士庶 간에 허혼 시기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에 「군신복의」를 참작하여 사리·군민 이하는 졸곡 뒤에, 당하 3품 이하에서 9품까지는 소상 뒤에, 당상 이상은 대상 뒤에 모두 3일간 차길하여 혼례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시행이 결정되었다.[11]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대 마련된 이러한 규정은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1649년 인조 국휼에서 金集은 「古今喪禮異同議」를 통해 차등이 없는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주자의 「군신복의」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景奭은 "3년의 상복을 입는 자와 전함 堂下로서 일찍이 3·4품 및 시종을 지낸 자는 담제 후 혼인을 허락하고 나머지는 『국조오례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효종은 빈청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명령했지만, 金尙憲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12] '담제 이후 허혼'이 조정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결정하여 반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國制로 인정받지는 못했다.[13]

이처럼 주자의 「군신복의」에 따라 차등적으로 혼인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었지만,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宋時烈은 「군신복의」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송나라의 승의랑과 조청대부 등을 조선의 관직에 대응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14] 반면, 尹拯은 『국조오례의』의 규정은 너무 분별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군신

10) 『文宗實錄』 卷4 문종 즉위년 11월 17일.
11) 『光海君日記』 卷3 광해 즉위년 8월 2일; 8월 6일.
12) 『孝宗實錄』 卷1 효종 즉위년 6월 24일.
13) 尹拯, 「四禮私議後識」, 『明齋遺稿』 卷30. "玄石論四禮私議書, (…) 婚條下. 仁祖朝禮曹啓辭, 其後別無申飭頒行之擧, 今不必拘也."
14) 宋時烈, 「答兪弼卿」, 『宋子大全』 卷100. "以朱子大全爲據, 則祔廟之後, 許承議郎以下, 小祥以後許朝請大夫以下, 大祥後許中大夫以下, 各借吉三日, 中大夫以上, 並須禫祭然後行禮云云. 未知宋之承議朝請等官, 與本朝官職高下如何耳."

복의」를 따르고자 했다. 이에 「군신복의」의 士吏는 지금의 校生·庶族, 選人은 지금의 생원·진사·학생, 承議郞은 지금의 參下, 朝請大夫는 지금의 통훈대부 이하, 中大夫는 지금의 통정대부, 太中大夫 이상은 지금의 가선대부 이상에 해당시켜 허혼의 시점을 구분하고자 하였다.[15] 그러나 朴世采는 윤증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 주자가 논한 신민이 시집가고 장가드는 설이 어찌 정정당당하지 않겠는가마는, 조정에서 반포하여 시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아래에서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지 『오례의』에 의거하여 처리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예를 아는 사람이 그 직급을 견주어 반드시 주자의 설에 통합시킨 연후에 행하게 한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양쪽 모두 구애됨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예로써 법을 헤아리는 대체입니다."[16]

박세채는 국가에서 변통하여 반포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국조오례의』에 따르되, 사대부가 각자 「군신복의」에 맞추어 행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군신복의」를 따르고자 하는 예학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국조오례의』의 규정은 국가의 제도로서 존중받았다. 사대부들은 사적으로 주자의 예학을 실천하는 것과 공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것과는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사정지 조항은 졸곡 전 정지하는 '대·중·소사'의 범위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었다. 첫째, 대·중·소사는 국가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가의 제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에서 대사는 종묘·영녕전·사직, 중사는 風雲雷雨·嶽海瀆 등, 소사는 馬祖·名山大川 등에 올리는 국가의 제사로 명시되어 있었다.[17] 그러나

---

15) 尹拯, 「國恤中冠昏喪祭禮私議」, 『明齋遺稿』 卷30. "婚. (…) 按五禮儀, 無論貴賤, 悉於卒哭後許婚, 恐太無分別. (…) 今當略依朱子說, 爲之節目, 士吏, 以今之校生庶族當之, 選人, 以今之生進學生當之, 承議郞, 以今之參下當之, 朝請大夫, 以今之通訓以下當之, 中大夫, 以今之通政當之, 太中大夫以上, 則以今之嘉善以上當之. 如此則庶乎適於厚薄隆殺之宜, 而不疑於行矣."

16) 尹拯, 「四禮私議後識」, 『明齋遺稿』 卷30, "玄石論四禮私議書, (…) 朱子所論民臣嫁娶之說, 豈不正正堂堂? 行之無弊, 而若非朝家大段變通而頒行之, 則亦難自下斟酌而創制. 愚意只當依五禮儀處之, 唯其士夫之識禮者, 各量其職秩事理, 必使通合於朱子說, 然後行之, 則公私兩無所礙, 此以禮揆典之大體也."

“국가의 제사를 정지하는 상황에서 사가의 제사를 감히 지낼 수는 없다.”는 인식이 있었고, 『禮記』「曾子問」의 “임금을 위해 복을 입고 있으니 감히 성대한 제사를 행할 수 없다.”는 고례를 강조하면서 사가의 제사를 중지하거나 간략하게 행하는 방식이 논의되었다.[18]

時祭는 국휼의 졸곡 전에 당연히 정지해야 한다고 보았다.[19] 시제는 정식 제사로서 길례에 해당되므로, 사가의 경우 졸곡 전후에 상관없이 喪을 마칠 때까지 시제를 지내지 못했다. 따라서 국휼의 졸곡 후에 사가의 시제를 행하더라도 길례의 기준이 되는 受胙 절차는 행할 수 없다고 인식되기도 했다. 반면 삭망참은 너무 간략하여 제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졸곡 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20] 그러나 기제나 묘제는 기일이나 묘소와 연관되어 완전한 길례는 아니라고 인식되었으므로, 간략히 지내거나 관직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등 이견이 분분하였다.

李珥는 成渾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국상의 졸곡 전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만한 禮文이 없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기제는 1년에 한 번뿐이니 지내야하고 묘제는 지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자신은 관직에 있으므로 모두 중지했고, 성혼의 경우에는 최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간략하게 기제를 지낼 수 있다고 보았다.[21] 박세채는 이이의 예설을 근거로 관직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강조했다. 관직이 있는 자는 국휼 졸곡 전에 기제와 묘제를 지낼 수 없는 반면, 관직이 없는 자는 기제와 묘제를 간략히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황의 “관직이 있는 자는 시속 명절제사[節祀]를 그만

17) 「祭禮」, 『經國大典』 卷3 禮典; 「辨祀」,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18) 宋翼弼, 「答浩原問」, 『龜峯集』 卷6. “國喪卒哭前大小祀幷停云者, 五禮儀本意, 則是擧國家之大小祀也. 於士庶無行廢之定, 草野民庶, 當以古禮爲準.”; 宋時烈, 「答李伯祥」, 『宋子大全』 卷112. “然國家於私喪祭祀, 皆無禁令, 而只是爲臣子者, 全用喪禮, 有不敢安於心, 故不能不有所損節.”

19) 柳長源, 「國恤中私家時祭」, 『常變通攷』 卷28 國恤禮. “退溪曰, 國恤卒哭前, 士大夫於其私家, 時祭不可行. (…) 明齋曰, 國葬後, 時祀雖設行, 而受胙之禮, 不當行.”

20) 朴世采, 「國恤卒哭前葬祭說【癸亥十二月十八日】」, 『南溪集』 卷55 正集. “祭禮朔望參, 當行. 栗谷答牛溪, 牛溪問龜峯, 龜峯答牛溪書, 皆同.”

21) 李珥, 「答成浩原」, 『栗谷全書』 卷11. “墓祭忌祭, 雖無分別. 但忌祭, 一年一度, 其日恝然無事, 是所不可忍也. 墓祭則卒哭後, 亦有節日, 故不必行也. 如珥則卒哭前, 忌墓兩祭, 俱廢矣. 如兄則無衰服, 略設一奠, 不備殷禮, 無妨也.”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관직이 있는 자는 기제와 묘제도 당연히 그만 두어야한다는 근거로 삼았다. 이황이 관직 유무에 상관없이 기제와 묘제를 허용한 경우는 왕후의 상을 왕의 상보다 가볍게 여겨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했다.[22]

반면 金長生은 국휼 중 사가의 명절제사와 묘제는 폐지하고 기제는 素饌에 술 한 잔만 올리는 약식으로 거행했는데, 관직 유무를 구분하지 않았다. 제자인 송준길과 송시열 역시 이에 동의했다.[23] 다만, 송시열은 만년에 예설을 수정하여 묘제 역시 간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장 전의 제사에 대해서 주자가 상정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제현이 서로 다른 논의를 세웠지만 또 선후가 서로 어긋나므로 후학들이 따를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제와 묘제를 삭망참처럼 간략하게 지낸다면 불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24] 윤증은 박세채의 예설에 따라 관직 유무를 고려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관직에 있는 자라도 기제는 간소하게 지내고, 관직이 없는 자라도 묘제는 산릉의 제사 여부에 따라 지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5]

둘째, 상례 과정에서 지내는 제사[喪祭]인 虞祭·卒哭·練祭(小祥)·祥祭(大祥)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이다. 『국조오례의』에서는 사가의 장례를 금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장례는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장례 이후 이어지는 상제 역시 장례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행해야 하는지(박세채설), 아니면 제사의 하나로 간주하여 졸곡 뒤로 미루어야 하는

22) 朴世采, 「國恤卒哭前葬祭說【癸亥十二月十八日】」, 『南溪集』 卷55 正集. "忌祭墓祭, 無官者略設, 有官者當廢. 退溪答李剛而【墓祭不上塚, 只於齋舍設素饌行之.】金而精書, 言當行, 似當通於有官無官. 答寒岡書言有官者節祀當廢, 則忌墓當廢可知.【恐答李金書以小君喪爲輕, 答寒岡書通言大喪.】 栗谷答牛溪書無官者當略設, 【忌祭一奠. ○又節祀略設於墓前, 此當指墓祭. ○龜峯說亦同.】有官者當廢."

23) 宋浚吉, 「答權叔訐【誌】誌思誠【諰○與尤庵聯名○壬申】」, 『同春堂集』 卷5 別集. "聞沙溪先師每遇國恤, 節祀墓祭, 並廢, 唯忌祭, 設素饌單獻云, 此豈非酌變之宜."

24) 宋時烈, 「答朴和叔【甲寅六月一日】」, 『宋子大全』 卷66. "惟是國葬前祭祀, 雖曾略陳而未詳, 殊恨殊恨. 大抵朱夫子於此未有商定, 本朝先賢, 互有異同之論, 亦有先後, 自相參差, 後學莫適所從. 然朔望參不廢之意, 則無不相符, 鄙意則以爲和朔望都廢則已. 如曰不廢, 則忌墓之致哀, 其視朔望小節, 不可同日而語矣. 略具饌品, 稍如朔望而行之, 恐無不可也."

25) 尹拯, 「國恤中冠昏喪祭禮私議」, 『明齋遺稿』 卷30. "祭. (…) 忌祭則雖有官者, 略設行之, 恐不可已. 墓祭則雖無官者, 當視陵寢之廢否而從之."

지(김장생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김장생은 "國制에 의하면, 국휼의 졸곡 뒤에야 크고 작은 제사를 모두 허락하고 있으니, 부모상의 大祥과 小祥은 잘은 몰라도 거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보았다.[26] 喪祭인 대상과 소상 역시 『국조오례의』의 제사 정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간주함으로써, 졸곡 후로 미루어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들인 김집 역시 고례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時王之制로 간주하면서, 이에 따라 연제와 상제는 국휼 졸곡 이후에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27] 제자인 송시열도 이에 동의하면서, 실제로 인목왕후의 葬事 전에 있었던 김장생의 小祥이 장사 이후로 미루어 거행되었음을 강조했다.[28] 또한 우제와 졸곡 역시 원칙적으로는 행할 수 없지만, 우제는 신을 편안케 하는 제사로서 자식된 정리상 차마 미룰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우제는 지내지만, 졸곡은 국휼의 졸곡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9]

반면 박세채는 『국조오례의』의 규정은 길제의 제사를 위주로 한 것이므로 상제에 속하는 연제·상제 등은 국휼의 졸곡 전에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30] 그는 국휼의 졸곡 전이라도 사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고, 喪祭도 당연히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예기』「증자문」의 "서자로서 관직에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상을 服喪하며, 적자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親喪을 행하면 된다."를 근거로 관직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강조했다. 관직이 있는 자는 국휼의 졸곡 뒤로 상제를 미루어 행하는데, 해당일에 간단히 奠을 올려

---

26) 金長生, 「大祥」, 『沙溪全書』 卷34 喪禮備要. "國制, 國恤卒哭後, 大小祀, 皆許行之. 私喪二祥, 未知其必不可行."

27) 金集, 「練祥禫·國恤卒哭後行練祥」, 『愼獨齋全書』 卷14 疑禮問解續. "問, (…) 從古禮, 則無官者, 可以行祭, 而國制卒哭後, 始許行之. 若此之類, 當何從? 答, 當從時王之制."

28) 宋時烈, 「答李汝九」, 『宋子大全』 卷90. "私家練祥不敢行者, 以練祥殷祭故也. 當待卒哭後擇日追行, (…) 曾於仁穆王后國恤時, 沙溪先生小祥, 在葬前. 愼齋與門人商議, 據曾子問註說. 退行祥祭於葬後耳."

29) 宋時烈, 「答李伯祥」, 『宋子大全』 卷112. "今日所論虞卒哭, 未知與大小祥輕重如何, 葬前旣不可行二祥, 則虞卒哭似亦不可行. 然二祥則於古必卜日行之, 然則二祥之退行, 自無所妨, 而虞則是安神之祭, 旣葬而不能安神, 則於人子之情, 誠有所不忍者, 故愚於前日敢爲似可行之說, 而然亦不敢專用常禮, 故以爲略依渴葬例, 卒哭則退行於國葬卒哭後."

30) 朴世采, 「答尹子仁」, 『南溪集』 卷4 外集. "蓋今二祥之追設, 不在於曾子問除君喪然後行殷祭之義, 在於五禮儀卒哭前停大小祀之文, 其義則然也. 第揆以鄙意, 國制云云, 似以吉祭爲主, 則二祥喪祭未見其必不可行."

祭를 지내지 못하는 사유를 고하고, 국휼 졸곡 후에 날을 정해 거행해야 한다고 보았다.[31] 박세채는 기제와 묘제의 시행 여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직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송시열은 이러한 박세채의 주장에 비판적이었다. 官制의 차이로 인해 고례를 당시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박하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후하게 하여 예를 잃는 것이 낫다."는 점에서 관직에 따른 구분에 반대했다.[32] 또한 『예기』「증자문」의 '적자'는 庶人의 적자로서 서인은 고례에 임금을 위해 자최 3월복을 입기 때문에 부모상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대부 집안이면 관직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3년복을 입는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33] 이에 대해 박세채는 "『상례비요』 이래로 우암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대한 구분을 두는 일이 없다 보니 그로 인해 이것이 통행하는 예"가 되어 관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상제를 졸곡 뒤로 퇴행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34]

한편 윤증은 우제는 당일에 지내고 졸곡과 祔祭는 장례를 치른 뒤로 물려서 행한다는 점에서는 송시열의 예설을 따르고 있다. 반면 연제와 상제는 박세채의 예설에 따라 관직의 유무를 구분하였다. 단, 제사 시행과 상복 變除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35] 국휼의 졸곡 전이라도 연제와 상제

---

31) 朴世采, 「國恤卒哭前葬祭說【癸亥十二月十八日】」, 『南溪集』 卷55. "葬當行. (…) 虞卒哭祔練祥禫, 無官者當行, 有官者退行. 無官有官, 依栗谷說以衰服爲節. 曾子問大夫士有私喪可以除條, 集說曰庶子居官而行君喪, 適子在家自依時行親喪之禮, 練祥猶然, 況虞卒乎? 此無官者之明證也. 但有官者旣服君服於身, 恐當只依小記旣葬不赴虞之文以處之, 虞卒與練祥同爲殷禮, 難行則經文旁照此最明當. ○練祥本日當依栗谷答牛溪, 龜峯答松江書略行一奠."

32) 宋時烈, 「答朴和叔」, 『宋子大全』 卷67. "有君喪不敢私服等說, 雖是古禮, 非後世之所可引用者. 栗谷所論官之高下, 蓋倣古禮爲之隆殺者而爲言, 豈不是正當道理? 然我國官制, 未能如古卿大夫士等級之井井不亂, 自三公以至百執事, 皆用一等例. (…) 我朝先賢之論, 亦多異同, 均無一定之論, 與其失於薄, 寧不當失於厚乎?"

33) 宋時烈, 「答沈子章」, 『宋子大全』 卷44. "禮記所謂嫡子自依時行親喪之禮云者, 此嫡子, 是庶人也. 古禮庶人服君喪, 但齊衰三月, 則無不可行親喪之義矣. 我國則士大夫家無論有官無官, 皆服三年, 則事體與古不同矣."

34) 朴世采, 「答尹子仁問」, 『南溪集』 卷37. "今日東方學士大夫所宗仰而遵用者, 將非退栗兩賢而誰哉? 兩賢所論國恤之制, 明有有官無官之別, (…) 然自備要以來及於尤丈, 無所分別, 因爲通行之禮."

35) 상복의 變除는 상복을 바꾸는 變服과 상복을 벗는 除服을 의미한다. 小祥에 練服으로 바꾸고, 大祥에 상복을 벗는 것에 해당된다. 윤증이 제사와 변제를 구분한 것은 『禮記』「喪服小記」의 "期年 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이고, 기년 만에 除喪을 하는 것은 도이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내용에 근거한다. 또한 구봉 송익필도 이러한 주장을 했으므로 윤증은 송익필

당일에 상복을 변제하는데, 제사 자체는 성대한 예[殷禮]에 해당하므로, 관직이 있는 사람은 졸곡 뒤로 미루어야 하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졸곡 전후에 상관없이 당일에 지낼 수 있다고 보았다.[36]

제사정지 규정은 주자의 「군신복의」에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고례를 근거로 하는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국휼 중 사가의 제사 거행은 "군신의 의리를 무시하고 사사로운 정을 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존존과 친친의 조율이 필요한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다.[37] 이러한 예설 논의는 국휼을 거행하는 상황에서 사대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行禮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규제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이후 예학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논의의 장이 朝廷으로 확대되고, 국가의 법제로서 재성문화되는 과정이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 국휼 졸곡 전 사가의 상·제례에 대한 諸說 비교

국휼 졸곡 전	상례						제례				
	장례	우제	졸곡	소상	대상	담제	시제	기제	묘제	삭망참	속절
김장생	○	-	-	○	○	-	×	略	×	○	×
송시열	○	○	退	退	退	×	×	略	略	○	×
박세채	○	退/○	退/○	退/○	退/○	退/○	×	×/略	×/略	○	×/○
윤 증	○	○	退	㊟/○	㊟/○	-	×	略	×	○	○

범례: ○(거행), ×(거행안함), -(언급없음), /(관직유/무), 略(간략거행), 退(졸곡 후 거행), ㊟(변제하고 제사만 졸곡 후 거행)

의 예설을 따르고자 했다. 반면, 박세채는 「상복소기」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사와 변제를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朴世采, 「答尹子仁問」, 『南溪集』 권37 正集. "【문】龜峯所言設奠脫服之說, 用於有官者退行祥祭之類, 其義實當, 而以爲不可用者何耶? 愚意欲從之, 未知如何. 【답】喪服小記, 雖有祭不爲除喪之說, 然古今禮制, 未見有分爲兩節者. 然則只設奠而遂脫三年喪之服, 恐甚未安, 不敢從也."

36) 尹拯, 「國恤中冠昏喪祭禮私議」, 『明齋遺稿』 卷30. "喪. (…) 只行三虞, 而退卒祔於葬後, 則爲可耶? (…) 然則無論有官無官, 皆當於再朞除喪, 而有官者則用退行殷祭之禮, 於國葬後, 更設祥祭, 無官者則用自行親喪之禮, 仍行祥祭矣. 如此然後通於古今, 適於情禮, 而君臣父子貴賤隆殺之節, 可以無所妨奪矣."

37) 宋浚吉, 「答權叔訏思誠」, 『同春堂集』 卷5 別集. "卒哭前大小祀皆廢者, 旣是時王之制, 則屈義伸情, 莫或有違於從周之義耶? 恨未及就正於函丈也."

3. 18세기 사가례 논의와『國朝喪禮補編』

1) 혼례 — 허혼 시기의 차등화

1720년 숙종 국휼은 주자의 「군신복의」에 따라 모든 신민이 삼년상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38] 아버지와 임금을 위해 모두 참최 3년을 입는 것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귀천 때문에 더하거나 덜하는 일이 없다."는 유교 관념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임금과 신하가 복을 똑같이 입되 약간의 구별을 두어서 상하를 분별한다."는 원리에 따라 복색을 구분하였다.[39] 혼인금지 조항 역시 주자의 「군신복의」를 근거로 官品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앞서 송시열의 지적처럼 송과 조선의 官制 차이로 인해 「군신복의」의 혼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士庶人은 졸곡 후에, 정3품 下階인 통훈대부 이하는 연제 후에 3일간 차길을 허용하고, 정3품 上階인 통정대부 이상의 당상관은 담제 후에 허혼하도록 정했는데, 경종 국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40]

영조 4년 효장세자가 사망하자, 왕의 大喪과는 다른 세자 상례에 대한 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었다. 예조는 소현세자상의 기록인『을유등록』에 혼인 금지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세자의 상례에 숙종상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으므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할 것을 아뢰었다. 영의정 李光佐는『가례』에서도 "당사자와 혼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기년 이상의 喪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휼의 졸곡 전에는 사가의 혼례를 허락할 수 없고, "졸곡한 뒤에는 전날 大喪 때에도 임시로 허락했던 만큼 이번에도 허락해야"

38)『肅宗實錄』숙종 46년 6월 8일.

39) 안희재는 「군신복의」에 따른 상복 개편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천하동례적 노론예론으로 간주하여 그 안에 내포된 차등 원리의 실천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안희재, 앞의 글, 156-158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거나 또는 상하를 의례의 형식에서 통일하려는 맥락이라기보다는 신분의 위계 속에서 상하가 모두 유교적 관념을 성취하려는 맥락에서 천하동례를 지향한다."는 지적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봉규, 앞의 글, 2011, 110면.

40)『英祖實錄』영조 6년 10월 27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의정 洪致中 역시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는 대로 졸곡 후에 가취를 허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세자상은 대상과는 구분하여, 『국조오례의』의 규정대로 졸곡 후에 혼인을 허락하도록 하였고, 영조의 허가를 얻었다.[41]

영조 6년 경종비 선의왕후가 사망하자, 신하들은 왕비를 위해 자최기년복을 입는다는 점에서 허혼의 시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다. 예조는 처음에 숙종상의 전례에 따라 금혼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왕비상에서 신하들은 연제 후 상복을 벗기 때문에 통정대부 이상, 통훈대부 이하를 막론하고 모두 연제 후 허혼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고 아뢰었다.

제조 金在魯는 "삼년상에서의 소상 후는, 기년상에서의 졸곡 후와 같다."는 점에서 통훈대부 이하는 통정대부 이상과 구분하여, 사서인과 같이 졸곡 후 허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제조 洪致中은 통훈대부 이하 下大夫와 사서인의 차등이 없어진다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영조는 대신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게 하였다. 판부사 李台佐와 좌의정 李墣은 김재로와 같이 통훈대부 이하는 졸곡 후 허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우의정 趙文命은 통훈대부 이하 하대부는 사서인과 차등을 두어야 하고, 사가에서도 기년 이상의 상이 있을 때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상 후 허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예조의 견해와 동일한 것이었고 영조도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42]

---

41) 『承政院日記』 영조 4년 12월 4일. "議于大臣, 則領議政李光佐以爲, (…) 嫁娶則身及主昏者, 無期以上喪, 方可行, 況在卒哭前, 何可許也? 卒哭後, 則前日大喪時, 亦且權許, 今則在所當許, 此兩款, 似無可疑. (…) 左議政洪致中以爲, (…) 至於嫁娶一節, 庚子服制釐正之後, 已有從職秩先後之序矣. 今於東宮喪, 卒哭之前, 遽行吉事, 於禮未安, 依五禮儀所載, 卒哭後許嫁娶, 似合於禮情. (…) 傳曰, 依領相議施行."

42) 『承政院日記』 영조 6년 10월 27일. "金始煥, 以禮曹言啓曰, (…) 初喪戒令條, 倉卒之際, 一依庚子例, 磨鍊啓下矣. 今番喪制, 與庚子·甲辰有異, 練後則臣僚服制已盡, 似無不可許婚之義, 而雖通訓以下, 朞年前則服制未盡, 勿論通政以上·通訓以下, 皆於練後許婚, 似爲得宜. (…) 提調金在魯曰, 庚子, 通訓以下, 小祥後許婚, 三年之制, 小祥後, 與朞之制, 卒哭後, 無異. 今則通訓以下, 卒哭後許婚, 似好矣. 上曰, 大臣之意, 何如? 都提調洪致中曰, 庚子年則通訓以下, 小祥後許婚, 而今番則小祥後, 通政以上, 自皆許婚, 通訓以下, 卒哭後似當與士庶人同之矣. (…) 問議于大臣, 則行判中樞府事李台佐以爲, (…) 今日卒哭之後, 可對庚子小祥之後, 諸臣已言之. 區區之見, 通訓以下, 許婚於卒哭後, 恐似合宜. (…) 左議政李墣, 與判府事李台佐議同. 右議政趙文命以爲, 無練之朞年喪, 必欲具三年, 待其卒哭後, 可對三年喪之小祥後, 則今此許婚一款, 似當視庚子·甲辰, 差等定式, 而但通訓上, 方下大夫, 雖不及下, 比士庶人則有間, 非但不可與士庶人同之, 雖以士喪禮言之, 無朞以上喪, 始許嫁娶, 自是先儒定論, 王朝典禮, 雖異於閭巷, 而此等處, 猶可以旁照, 通訓以下, 竝與下大夫, 小

영조 27년 효장세자빈인 현빈과 영조 28년 의소세손의 상례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되었다. 예조판서 李益炷은 현빈상에서 주로 참고한 단의빈 상례 기록인『무술등록』에는 사대부가의 혼인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 논의하여 정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이에 도제조 金若魯는 신하들이 세자빈을 위해 상복을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례 전에 허혼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영조가 公除 뒤에 허혼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43] 의소세손의 상례 역시 현빈의 경우와 같이 '졸곡'이 아닌 '공제'가 허혼의 기준이 되었다.[44]

이상의 논의들을 거쳐 완성된 1752년본『국조상례보편』계령조의 혼인금지 규정은『국조오례의』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관직에 따른 차등이 명시되었다. 홍계희는 주자의「군신복의」를 참작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고 영조는 "상례가 고례를 회복한 후에도 남아있던 구습을 깨끗이 없앴다."며 높이 평가했다.[45] "관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직위에 차출되어 나간 자는 높은 관직을 기준하고, 관직이 올랐으면 새로 오른 관직을 기준하고, 폄직을 당한 자는 폄직되기 이전의 관직을 기준한다."는 부분은「군신복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군신복의」는 허혼의 등급을 7단계로 구분한 반면, 홍계희는 조선의 실상에 맞게 3단계로 정리하였다. 졸곡을 기점으로 하여 소상과 담제의 3단계로 나눈 것은 숙종상의 규정과 동일하다. 단 숙종상의 경우 품계에 따라 통훈대부 이하, 통정대부 이상으로 구분한 반면, 홍계희는 통훈대부를 實職3품으로, 통정대부를 당상관으로 喪杖을 받은 자[46]와 실직2품 이상으로 보다

祥後許婚, 似爲合宜. (…) 傳曰, 依右相議施行."

43)『承政院日記』영조 27년 11월 18일. "益炷曰, 卽今士夫家婚姻一節, 旣無明白可據之例, 而取考戊戌戊申謄錄, 則亦無葬前禁婚之令矣. 當行與否, 不可不一番稟定, 故敢達矣. 上曰, 大臣之意, 何如? 若魯曰, 朝臣旣無服制, 則葬前過婚, 似非違禮矣. 上曰, 公除後, 使之過婚, 可也."

44)『承政院日記』영조 28년 3월 5일. "益炷曰, 婚喪人之大事, 今當此時, 不可不一番稟定, 而取考戊申謄錄, 則士大夫家婚嫁葬祭, 竝於卒哭後, 許行矣. 今番則比戊申不無差等, 而有參量定限之道,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昨年例, 公除後許行, 可也."

45)『承政院日記』영조 28년 6월 11일. "喆輔曰, 禁嫁娶條, 洪啓禧, 依朱子說參酌定式事, 筵稟蒙允矣. (…) 上曰, 五禮則如何? 錫禧曰, 卒哭後, 勿論大夫士民, 竝許嫁娶矣. 上曰, 喪禮復古之後, 尙今因循, 可爲蕩然矣."

46) 상장을 받는 것[受杖]은「군신복의」의 "일찍이 侍從 이상으로서 奏事를 맡았던 자는 모두 受杖을 허락한다."를 근거로 하여 숙종상에서 제도화되었다. 영의정 김창집의 주장에 따라 당상관·侍從과

구체화시켰다.[47]

이렇게 실직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를 축소시키는 규정은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혼인의 경우, 『가례』에서도 신랑신부 양가의 당사자와 혼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기년 이상의 喪이 없어야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상존했다.[48] 따라서 權道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국휼의 규제까지 적용될 경우 혼례의 시기를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에 정조 10년 문효세자상에서는 『국조상례보편』 계령조의 혼인금지 조항이 혼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49] 이러한 경우 당상관 이상의 자손이라도 본인은 사서인에 해당되므로 졸곡 뒤에 혼인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혼인금지에서 오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더 범위를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왕과 왕비 그리고 세자와 세자빈이라는 지위에 따른 구분과 차등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왕비상과 세자상에서는 실직3품 이하는 졸곡 뒤에 3일간 차길을 허락하고 시종신을 거친 당상관 이상은 小祥을 지낸 후에 허혼하도록 하였다. 세자빈상의 경우는 공제 뒤에 모두의 혼인을 허락하였다.[50] 『국조오례의』가 왕과 왕비의 국휼을 중심으로 한 반면,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세자와 세자빈 국휼에 대한 규정을 보충하여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는데, 왕의 大喪과 왕비의 內喪 그리고 세자의 小喪과 세자빈의 小內喪이라는 명칭이

臺侍 이상을 역임한 자, 兵使·水使에게 상장을 내리도록 정했다. 『景宗修正實錄』 卷1 경종 즉위년 6월 17일.

47) 「戒令」, 『國朝喪禮補編』 卷1, 1752. "殯殿. (…) 註, 士吏軍民, 許卒哭後, 實職三品以下, 許小祥後, 竝借吉三日, 堂上受杖以上及實職二品以上, 許禫後. (…) 官卑而差遣職事高者從高, 遷官者從新, 貶官者從舊. 【當在禁嫁娶下. ○原書卒哭後許嫁娶借吉三日今改. 受敎.】"

48) 송시열·박세채의 논쟁과 이후 김종후·김원행의 논쟁을 참고할 수 있다. 김윤정, 「18세기 本庵 金鍾厚의 『家禮集考』 편찬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제30집, 한국실학학회, 2015, 297-298면.

49) 『日省錄』 정조 10년 6월 20일.

50) 「戒令」, 『國朝喪禮補編』 卷1, 1752. "殯殿. (…) 內喪則實職三品以下, 許卒哭後借吉三日, 堂上曾經侍從以上, 小祥後乃行吉禮. (…) 殯宮. (…) 禁嫁娶【實職三品以下, 許卒哭後借吉三日, 堂上曾經侍從以上, 小祥後乃行吉禮. 若內喪則竝許公除後.】" 대상과 마찬가지로 實職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특히 선의왕후상과 비교하면 소상 이후 허혼하는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확립되면서 지위에 따른 구분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51]

■ 국휼 중 흔례 허용 시점

	공제	1월 3월 복토	졸곡	부묘 소상 대상 담제	단계
주자 군신복의		軍民 士吏 選人		承議郎 이하 / 朝請大夫 이하 / 中大夫 이하 / 太中大夫 이상	7
국조오례의(1474)				모두 3일 차길	1
허조(세종 4)		軍民 無職兩班子弟		4품 이하 / 3품 / 2품 이상	5
선조상(광해군즉위년)				사리·군민 / 당하3품-9품 / 당상 이상	3
이경석(효종즉위년)				*외 모두 3일 차길 / 3년복·전함3·4품·시종*	2
윤증(숙종 6)		軍民 校生·庶族 생원·진사·학생		參下 / 통훈대부 이하 / 통정대부 / 가정대부 이상	7
숙종상(경종즉위년)				사서인 / 통훈대부 이하 / 통정대부 이상	3
효장세자상(영조 4)				모두 3일 차길	1
선의왕후상(영조 6)				사서인 / 下大夫 이상	2
현빈·의소세손상 (영조 27·28)		공제 뒤 모두 허용			1
국조상례보편 (1752,1758) 대상				사리·군민 / 실직3품 이하 / 堂上受杖·실직 2품 이상	3
국조상례보편 (1752,1758) 내·소상				실직 3품 이하 / 시종신을 거친 당상 이상	2
국조상례보편 (1752,1758) 소내상		공제 뒤 모두 허용			1

※ 차길은 상중에 3일간만 임시로 허락하는 것으로, 상이 끝난 후 정식으로 허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밑줄로 표시된 것 외에는 모두 차길의 의미임을 명시해둔다. 단 소내상과 세손상의 경우는 신민의 상복이 없기 때문에 공제 뒤 모두 허가하여 차길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다.

51) 1752년본『국조상례보편』계령조는 왕·왕비의 殯殿과 세자·세자빈의 殯宮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1758년본은『국조오례의』를 원본으로 삼아 대상·내상을 중심으로, 소상·소내상의 규정을 보충하였다.

2) 상례 — 존존과 친친의 조율

국휼 중 사가의 상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는 숙종 27년 인현왕후상에서 비롯되었다. 영의정 최석정은 숙종에게 국휼 중 사가례 시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상소를 올렸다. 최석정은 『禮記類編』의 저자로서 예학에 밝았고, 당시 『典錄通考』의 편찬을 담당하면서 법제 정비사업을 이끌었던 만큼[52] 사가례 규정의 제도화에도 관심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석정은 먼저, 국휼 중 사가의 장례는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국조오례의』에도 장례를 금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산릉을 정하기 전에 士夫家에서 간혹 장례를 행하지 않은 자가 많아서 이것이 풍속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53] 그러나 『예기』의 "장례는 輕한 것을 먼저 하고, 重한 것을 뒤에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임금이 중하고 어버이가 경하므로 사대부들이 어버이를 먼저 장사지내는 것은 예에 어긋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부·사·서인의 장례는 각각 5·3·1월에 치르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넘기면 곧 僭禮가 된다는 점에서 사가의 장례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54]

숙종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국휼의 졸곡 전이라도 사가의 장례는 거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의 국휼에서도 인현왕후상에서 결정된 바를 따라 별다른 논쟁없이 사가의 장례가 허용되었다.[55] 『국조상례보편』(1758) 「수교분류」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는데, 우제 역시 장례의 일환으로 인정하여 해당일에 거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56]

다음으로 제기한 국휼 중 사가의 喪祭 거행에 대한 문제는 논쟁의 상황으

52)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경인문화사, 2016, 51면.

53) 이러한 문제는 송시열 역시 지적하고 있다. 宋時烈, 「答兪弼卿」, 『宋子大全』 卷100.

54) 『承政院日記』 숙종 27년 8월 23일. "領議政崔錫鼎所啓, 國恤時, 元無禁葬之令, 而在前, 山陵微定之前, 士夫家, 或多未行葬禮, 因以成俗. 禮曰, 葬先輕而後重, 竝有父母喪者, 先葬母而後葬父, 以葬是奪情之事故也. 君重親輕, 士夫之先葬親, 於禮不違, 且士夫士庶人之葬期, 各有月數, 若踰越定期, 則便成僭禮, 別爲定式, 分付, 使之行葬, 似宜矣. 上曰, 所達誠然, 以此意分付, 可也."

55) 『承政院日記』 영조 4년 11월 25일. "領議政李光佐以爲, (…) 然葬, 先輕後重, 禮意也. 臣庶先行, 宜若無嫌, 過時不葬, 反近於僭, 故辛巳國恤時, 旣以此, 定奪許葬, 則今更請詢, 未知其故,"

56) 「戒令」, 『國朝喪禮補編』 卷4 受教分類上. "傳曰, 邦禮無禁葬之例, 其在道理, 亦不可踰月, 勿論公除前後, 葬事則許行. (…) 傳曰, 雖國恤因山前, 卿大夫士庶虞祭, 依葬例, 亦爲許行."

로 전개되었다.[57] 최석정은 『국조오례의』 '대·중·소의 제사'라는 것은 곧 나라의 제사이며, 사대부가의 제사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예기』 「증자문」에서 공자가 "복을 벗는데 때를 지나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으므로, 연제와 상제를 거행하여 상복을 變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제·상제·우제·졸곡 등은 상중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본래 길흉이 서로 중첩되는 혐의가 없으므로, 국휼의 졸곡 전에 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박세채의 예설에 따라 조정으로부터 제도를 정하여 예경에 따라 제사를 행하고 복을 벗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58]

숙종은 처음에 최석정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李鳳徵의 비판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되었다. 이봉징은 『예기』 「증자문」의 "임금의 상이 있어 몸에 복을 입고 있으면 감히 私服을 못하는 것이니 또 무엇을 벗는다는 것인가. 그래서 시기가 지나도 복을 벗지 못하는 것이며 임금의 상복을 벗은 뒤에 殷祭를 행하는 것이 예이다."라는 공자의 말을 근거로 국휼의 졸곡 전에는 은제인 연제와 상제를 거행하여 私喪의 상복을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상으로 상하가 슬퍼하고 百司가 직무를 폐하고 있는데, 신하된 자로서 어찌 감히 私禮를 갖추어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겠습니까?"라고 하여 존존을 친친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최석정은 "지금의 군자는 당연히 입을 임금의 상복은 입지 않고 도리어 마땅히 벗어야 할 어버이의 복을 입으니, 이는 先賢들이 말한, '부자는 있고 군신은 없다.'는 데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국휼의 졸곡 전이라

57) 李肯翊, 「國喪」, 『練藜室記述』 卷2 別集.

58) 최석정은 '박세채의 예설'에 따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국휼 졸곡 전 喪祭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박세채의 예설과 같지만, 박세채는 관직의 유무를 구분하여 관직이 없는 자는 상제를 정식으로 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정은 관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신민이 국휼 졸곡 전에 연제와 상제를 치를 수 있는데, 다만 정식이 아닌 간략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정은 윤증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예설에 대해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尹拯, 「四禮私議後識」, 『明齋遺稿』 卷30. 박세채는 1688년의 편지에서도 관직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강조했던 만큼, 최석정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朴世采, 「答宋質夫問【國恤禮○戊辰九月二十三日】」, 『南溪集』 卷8 外集. "凶祭自虞以下依練祥, 無官者當行, 有官者當退行於卒哭後, 庶無甚悖矣."

고 私喪의 연제와 상제를 지내지 않고 상복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 오히려 존존보다 친친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최석정과 이봉징은 모두 존존을 중시했지만, 연제와 상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숙종은 대신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고,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권상하는 송시열의 예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국휼 졸곡 전에 장례와 우제는 지낼 수 있지만, 졸곡·연제·상제 등은 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기』「증자문」은 명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글을 억지로 곡해하여 의리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까운 先正(송시열)의 정론을 따르는 것이 폐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이후 숙종과 경종 국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59]

이 문제는 소론인 박세채·윤증·최석정과 노론인 송시열·권상하 예론의 차이가 드러나는 사안이었다. 자칫 예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석정과 윤증은 쟁론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윤증은 조정에서 의견을 구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일체 내보이지 않았다. 그는 "비록 私家의 일이지만 바야흐로 대신에게 수의하여 장차 그 제도를 정하는 일이니, 바로 조정의 典章이 되는 것"이므로, 사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올릴 수 없다고 인식했다. 또한 "지금은 國制로 정해져서 행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예에 있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들쑥날쑥 통일되지 않는 근심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여, 권상하의 예설에 따랐음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언급을 남겼다.[60]

영조 4년 효장세자상에서는 졸곡 전이라도 사가의 우제·졸곡·연제·상제를 허락해야 한다는 정제두의 예설이 채택되었다. 박세채의 제자인 정제두는 세자의 소상이라는 점에서 왕의 대상과는 차등이 있음을 전제하였다. 그럼에도 상례의 우제·졸곡·연제·상제는 흉례에 속하고, 길례의 제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점은 박세채의 예설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예기』「증자문」에서

59) 주 66) 참조.

60) 尹拯, 「四禮私議後識」, 『明齋遺稿』 卷30. "崔相旣建白爲定式之後, 有疏論, 其不可者, 遂有收議大臣儒臣之事, 愚以草莽賤分, 不敢當儒臣之名, 前後收議一未仰對, 此事雖是私家之事, 而方爲收議大臣, 將爲之定制, 則便是朝家典章, 故禮官再至, 終不敢以私相往復者上聞. (…) 蓋崔相未建白之前, 則士夫家各執所見, 或有行之者, 或有不行之者, 今則定爲國制, 雖於禮未知允當, 而可無參差不齊之患矣. 拯又識."

대부의 연제와 상제를 금지한 것은 옛날의 대부란 公所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므로, 지금의 사대부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다.[61]

영조 27년 현빈과 영조 28년 의소세손의 국휼에서는 대·중·소사 정지의 기준이 혼인금지와 마찬가지로 '졸곡'에서 '공제'로 변화되었다. 영조는 "士庶가 葬祭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제사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공제 이후 국가 제사를 지낸다면 사가의 경우도 금할 수 없다고 보았다.[62]

이렇게 공제가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1752년본『국조상례보편』에는 세자와 세자빈 국휼 시 '공제 전 대·중·소사 정지'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국조오례의』제사정지 조항에서, '먼저 난 내상'의 제사 허용 기준인 전하의 '복진'이 '공제'로 수정되었다. 이에 공제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었는데, "공제는 以日易月하여 3년은 27일, 장기는 15일, 기년은 13일, 대공은 5일, 시마는 3일로서, 모두 성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63] 공제의 개념이 단의빈상을 계기로 공무를 위해 임시로 상복을 벗지만 상기는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이후 국휼의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64]

1757년 영조비 정성왕후와 숙종비 인원왕후의 국휼을 거행하면서, 1752년본을 수정·보완한 1758년본『국조상례보편』이 편찬되었다. 특히 정성왕후상에서 국휼 중 사가의 상례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논의되었다. 정성왕후는

---

61)『承政院日記』영조 4년 12월 19일. "大司憲鄭齊斗以爲, (…) 凡祭者, 皆吉禮也. 與凶禮不相竝, 故凡祭之有不受胙者, 乃喪禮也. 皆屬凶禮, 非吉禮, 如虞卒哭小大祥, 皆是也. 今如俗祀之小者, 猶可許之, 則喪祭之凶禮, 獨不可行耶? 在前所以有此疑者, 蓋以曾子問有君喪, 服於身, 不得行二祥之禮, 爲疑也. 然此則古者大夫, 以公子公孫持重服在公所者, 謂也, 非今士夫之事. 況今日之事, 邦禮之等威隆殺旣別, 祭祀之吉凶輕重亦異, 其不可以前日之疑爲難, 可知也. 今者, 凡虞卒哭小大祥之事, 則使之許行, 似宜矣. (…) 傳曰, 依都憲議施行."

62)『承政院日記』영조 27년 11월 18일;『승정원일기』영조 28년 3월 16일. "上曰, 承旨書之. 雖命代理, 祀與戎, 不在代理中, 今日公除已過, 大小祀典, 中日習操, 竝依例擧行, 士庶之不敢葬祭, 國之祀典停止故也. 國之祀典旣行, 無可禁, 自今日勿禁."

63)「戒令」,『國朝喪禮補編』卷1, 1752. "殯殿. (…) 註公除【當在停祭註殿下下. ○原書註服盡, 今改. 謄錄.】○註公除, 卽以日易月之制也. 三年二十七日, 杖朞十五日, 朞十三日, 大功九日, 小功五日, 緦三日, 皆自成服日計除.【當在停祭註行祭如常下『謄錄』】(…) 殯宮. (…) 停祭【公除前, 停大中小祀, 殯後唯祭社稷, 而宗廟諸陵諸殿朔望只行焚香.】"

64) 김윤정,「18세기 端懿嬪의 喪禮와 服制論議」,『장서각』제3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44-248면.

1757년 2월 15일 창덕궁 觀理閤에서 승하했는데, 영조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먼저 난 내상'에 해당되었다. 3월 2일 예조판서 이익정은 1752년본『국조상례보편』을 근거로 공제 이후 국가의 대·중·소사를 행할 수 있으므로, 사가의 연제와 상제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조는 이익정의 주장에 동의하면서,『국조상례보편』(1752)의 규정을 時王制禮로 간주하여 사가에서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65)

3월 11일에 홍계희는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면서, 정성왕후 졸곡 전에 사가의 연제와 상제를 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현왕후 국휼에서 권상하의 주장에 따라 '졸곡' 전 사가의 연제와 상제가 금지되어 왔고, '공제' 후 국가의 대·중·소사를 허용하는『국조상례보편』(1752)의 규정은 사가의 행례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영조는 공제 후 제사를 허용하는 시왕의 예는 사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66)

> 상이 이르기를, "상례가 고례를 회복하여 漢의 비루한 제도를 모두 씻어냈다. 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삼년상의 제도는 천자와 서인이 하나이니, 비록 제사를 금지하는 때여서 상시의 범절을 감히 행하지는 못해도 상제와 담제에서 어찌 감히 때를 넘기겠는가? 아!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여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미루어 헤아려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는 도리인 것이다. 공자 또한 이르기를, '예로 제사 지내라.'고 하였는데 만약 사대부와 서민으로 하여금 그 예를 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王者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도리이겠는가? 비록 因山 이전의 제사를 금지하는 때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공제 전후를 논할 것 없이 상제와 담제에 이르기까지 금지하지 말아서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 상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고 하였다.67)

---

65)『承政院日記』영조 33년 3월 2일. "益炡曰, 公除後大中小祀, 朝家竝皆行之, 則士大夫家大小祥, 似無停廢之節, (…) 上曰, 今番則公除後, 朝家旣行大中小祀, 則一從時王制禮, 可矣."

66)『承政院日記』영조 33년 3월 11일. "啓禧曰, 禮判之以此事陳達, 實是不當稟而稟者矣. 辛巳以後, 私家練祥之行否, 累經筵稟, 而因先正臣權尙夏收議, 肅廟已令依議施行, 故其後國恤時, 私家練祥, 不得備禮行之, 且以事理言之, 私喪期慼在殯時, 亦不得備禮行祭, 則國母葬前, 何可不廢練祥耶? 與國家公除後行大中小祀者, 事體不同矣. (…) 上曰, 旣已下敎, 有何崢嶸? 當從時王之制."

67)『承政院日記』영조 33년 3월 11일. "上曰, 喪禮復舊, 一洗漢之陋制. 孔聖豈不云乎? 三年之制, 天子庶人, 一也. 雖禁祭之時, 常時凡節, 其雖不敢, 至於祥禫, 焉敢踰也? 噫, 老老興孝, 卽挈矩之道也. 孔聖亦云, 祭之以禮, 其令士庶, 不能伸禮, 豈王者以孝爲治之道乎? 雖因山前禁祭之時, 毋論公除前後, 至於祥禫, 則

더 나아가 영조는 효를 강조하면서, 사가의 상례 역시 효를 실천하는 것인 만큼 국휼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조의 하교는 공제 전에도 사가의 연제와 상제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공제' 후 시행을 주장한 이익정과 '졸곡' 후 시행을 주장한 홍계희의 예설과 차이가 있었다. 앞서 인현왕후상에서 최석정이 주장한 예설과 일맥상통하지만, 효를 근거로 하는 것은 영조의 새로운 주장이었다. 영조는 유교이념을 실천하는 성인군주로서 신민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상례를 국휼로 인해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이러한 인식은 존존보다 친친을 우선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3월 26일 숙종비 인원왕후가 사망하고 국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3월 29일 영조는 자신의 하교를 재검토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68] 9월 19일에는 국휼 중 사가의 연제와 상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홍계희는『예기』「증자문」과 인현왕후 국휼 시의 규정을 근거로 졸곡 전 연제와 상제를 행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또한 3월 11일의 하교로 인해 연제와 상제뿐만 아니라 기제까지도 예를 갖추어 행하는 자가 많아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69] 판윤 申晦와 이조참판 金致仁 등도 모두 동의했고 영조도 이 내용을『국조상례보편』에 수록하도록 하였다.[70] 졸곡 전 사가의 연제와 상제를 금지하는 규정은『국조상례보편』「수교분류」에 수록되었고, 본문에

勿禁, 以示體聖訓重喪禮之意."

68)『承政院日記』영조 33년 3월 26일. "上曰, 頃者祥禫許行之敎, 驟看其文, 似指在先時事, 而雖在先時, 公除前, 行大中小祀乎? 若此, 故特許二祭, 而且其文頭辭曰, 雖因山前禁祭之時, 勿論公除前後, 雖停大中小祀之日, 其於祥禫一體許之之意, 當今日更思之, 今不下敎, 想必又有疑惑, 故詳諭."

69) 실제로 大山 李象靖은 영조의 하교를 근거로 국휼 중 사상의 연제와 상제를 지내야 하고 졸곡 후로 미루어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象靖,「國恤服制私議」,『大山集』卷42. "貞聖王后喪, 禮曹判書入啓, 士夫家練祥行否, 當有定式. 上曰, 練祥是有限之祭, 其令當日設行云云.【不記全文, 大意如此.】今遂定爲時王之制, 朝野皆依此行禮, 自此無退行之疑矣."

70)『承政院日記』영조 33년 9월 19일. "啓禧曰, 戒令條, 五禮儀則私家祭禮, 初不擧論, 而今番以私家練祥事, 屢有下敎, 中外猶不能曉然, 將欲一依下敎入錄, 而臣則竊以爲, 國恤時私家練祥之不得行, 自曾子問, 已有明白正論, 先正獻議, 肅廟定式, 卒哭前練祥之不得行, 恐不可更議. 且自有此敎之後, 忌祀亦多有備禮行之者, 至有行時祭者, 極涉未安矣. 私家練祥, 待國恤卒哭後行之之意, 定式以錄, 何如? 上曰, 諸堂之意, 何如? 晦曰, 此是臣等相確之言也. 今番私家, 雖因朝令, 練祥忌祭, 多有備禮行之者, 而其爲未安則誠大矣. 臣意亦與重臣同矣. 致仁曰, 國恤卒哭前, 私家練祥之許行, 大違禮意. 重臣所達, 允爲得宜, 臣無容別議矣. (…) 上曰, 依所達載錄, 可也."

도 수교를 참고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71]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의 이 규정은 결론적으로는 인현왕후 국휼 시 규정과 동일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영조의 새로운 예설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는 성인군주로서 효를 강조했지만, 사대부의 예설과 인현왕후상 이후의 전례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72] 또한 국휼이 私喪에 대해 갖는 尊尊의 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결국 영조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홍계희를 포함한 여러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방식으로 복구했으며, 그 내용을 『국조상례보편』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3) 제례 — 자율에서 규제로의 전환

국휼 중 사가의 제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숙종상에서 이루어졌다.[73] 金昌集은 국휼의 졸곡 전에 사가의 기제·묘제·삭망참의 절차에 관하여는 조선 학자들의 의논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朝家에서 일정한 제도를 세울 필요는 없고, 각자가 생각하여 그 마음에 편안한 것을 구하여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 대신의 의논도 모두 같았고, 경종의 허락을 얻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휼 중 사가 제사에 대해 매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국가에서 하나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기보다, 사대부의 자율적인 예의 실천

71) 「戒令」, 『國朝喪禮補編』(1758) 卷1. "停祭【(…) 私家停祭, 見受敎祖.】"

72) 영조는 정성왕후의 혼전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를 원칙으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국조상례보편』에 수록했다. 김윤정, 「英祖代 貞聖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서울과 역사』 제98호, 서울역사편찬원, 2018, 75-76면. 이 경우는 국휼에 국한된 혼전의 문제라는 점에서 사대부 예학과 분리되었고 존존과 친친의 충돌이 없었으므로, 영조가 주장하는 시왕지제가 쉽게 수용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73) 『承政院日記』 경종 즉위년 7월 15일. "領議政金昌集, 以爲國恤卒哭前, 私家忌祭墓祭朔望參當行與否, 我朝諸賢之論, 亦多不一矣. (…) 大抵禮家繁簡之節, 不能盡同, 君臣之分, 亦不能不因遠邇, 而有親疎之別, 今朝家不必立爲一定之制. 許令臣下, 各自隱度, 求其安於心志爲之, 則或行或廢, 俱不外於先正之論, 行之者遠乎仁, 廢之者近乎義, 其間得失, 無甚相遠, 處之如斯, 恐或無妨, 伏惟上裁. 行判中樞府事金宇杭, 右議政李健命, 與領議政議同. (…) 傳曰, 依領相議施行."

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조 4년 효장세자상에서 이광좌는 숙종상에서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나라의 제사를 이미 중지했다면 사가의 제사도 감히 지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졸곡 전에는, 묘제는 중지하고 기제는 간략히 지내며 삭망참은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례에 실려 있지 않은 데다 先儒들이 지냈던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의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74)

반면 정제두는 왕과 세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참최복을 입는 大喪에서는 장례 전에 신하들은 가묘의 일을 언급하면 안 되고, 삭망참과 기제를 모두 중지하여 졸곡 후에야 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단 세자상은 기년복이므로 기일과 묘제의 경우 조촐한 음식으로 대략 정성을 펼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제와 묘제는 모두 俗禮로 正祭가 아니고, 삭망제는 역시 참배하는 일이지 제례가 아니므로 조정의 명령에서도 재결하여 허락하면 되는데, 다만 명절에 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였다.75) 김간은 이이와 성혼의 예설을 근거로 삭망참은 지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삭망참은 제사가 아니다.”고 할 정도로 간소한 의절이므로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76) 영조는 이러한 견해를 수렴하여 묘제는 중지, 기제는 간략하게, 삭망참은 원래대로 지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1758년『국조상례보편』편찬과정에서 영조는 국휼 중 사가의 기제와 묘

---

74)『承政院日記』영조 4년 12월 4일. “至於祀祭, 庚子收議, 請令臣下, 各自求其所安而行之者, 未知其果合於國體. 大抵國家祀享旣廢, 私祭宜不敢行, 墓祭之廢, 已有定論, 忌祭亦不當備禮行之. 若夫私以酒果, 伸其喪餘之哀, 似非當禁, 朔望參, 先賢以爲當行. 然此旣不載於古禮, 先儒所行, 亦各有不同者, 有官無官, 亦宜有別, 而義起而裁斷, 以成一定之制, 非臣所及, 更問於知禮之臣而處之, 恐爲合宜, 伏惟上裁.”

75)『承政院日記』영조 4년 12월 4일. “右參贊鄭齊斗以爲, 下詢私家祭祀之節, 曾在庚子甲辰兩大喪之日, 臣之愚意以爲, 斬衰葬前, 臣子家廟中事, 不可擧論. 雖如朔望忌日之類, 一切停廢, 以待卒哭後令. 至於辛巳內喪時, 則以爲諸臣, 旣服朞制, 異方喪, 如朔望參忌日之類, 略伸小薦, (…) 今日之事, 恐亦如此,”;『承政院日記』영조 4년 12월 19일. “大司憲鄭齊斗以爲, 祭祀之禮, 如忌日上墓等祭, 皆是俗禮, 非正祭也. 朔望, 亦是參事, 非祭禮也. 是以先正, 亦多有間行, 而朝令亦在裁許中, 可也. 唯墓祭, 以名節上墓爲事者, 不行, 亦宜也.”

76)『承政院日記』영조 4년 12월 4일. “副司直金弦以爲, 下詢私家祭祀之禮, 臣方在死疾, 兼且素昧禮學, 則何敢容易輕議. 第先正臣李珥曰, 國恤卒哭前朔望參, 則非祭祀也. 依常例行之, 何妨? (…) 傳曰, 先正所定, 旣若此, 今尤何更議?”

제는 상례의 연제와 상제의 예에 따라 졸곡 후에 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77] 연제와 상제의 경우, 이미 인현왕후상의 규정에 따라 졸곡 뒤로 미루어진 만큼, 기제와 묘제 역시 졸곡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내용은 1758년본『국조상례보편』「수교분류」에 그대로 수록되었다.[78] 시제와 삭망참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은 이미 사대부의 예설 논쟁에서 기제는 지내지 않고 삭망참은 지내는 것으로 수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국조상례보편』으로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휼 중 사가 제사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전개되었다. 먼저 국휼 졸곡 전에는 기제와 묘제를 지내지 못한다면, 술 한 잔 올리는[單獻] 간략한 방식 역시 불가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任聖周는 기제의 경우 간략한 방식으로 거행하는 것을 인정했다.[79] 반면 朴胤源은 선현들이 기제와 묘제를 간략하게 행한 것은 국가에서 제사를 금하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신하로서 감히 예를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수교로 반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기제와 묘제는 단헌으로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현의 논의와 다르더라도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80]

다음으로,『국조상례보편』에 빠져있는 삭망참과 속절의 거행 여부에 대한 문제였다. 임성주는 "큰 절목 안에 작은 것들은 자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속절은 이미 중단했고 선유설에 따라 계속 행해왔던 삭망참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81] 박윤원은 "최근에 들으니 인가에서 삭망참을 폐지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삭망참은 예가 가장 간

77)『承政院日記』영조 34년 2월 25일. "上曰, 雖國恤, 因山前卿大夫士庶虞祭, 依葬例亦爲許行, 忌墓祭依練祥例施行, 三年內禁方竝過矣. 此後勿禁."

78)「戒令」,『國朝喪禮補編』卷4 受敎分類上. "卿大夫士墓祭, 依練祥禮, 待國恤卒哭後行之."

79) 任聖周,「答朴永叔」,『鹿門集』卷6. "忌祭則固當廢之, 而二祥日則與常時忌日有異, 並與單獻而廢之, 終有所不忍, 略設而哭之, 亦何妨耶?"

80) 朴胤源,「與三山齋金公」,『近齋集』卷6. "國恤中, 私家祭祀行廢, 諸先正議論不一, 而忌墓祭單獻之意則同,【墓祭不上墓, 齋舍或壇.】時則自國家無禁祭之令, 故在下者, 只以分義不敢備禮, 以爲畧行伸情矣. 今番則朝家有令甲, 依丁丑年後受敎頒出擧條, 私家祭祀, 虞祭外忌墓祭, 亦令國葬卒哭後行之, 則並與單獻, 而似不可行矣. 雖有先賢之論, 於此只得遵朝令而已."

81) 任聖周,「答朴永叔」,『鹿門集』卷6. "儀註中不言俗節朔望參, 或者所謂以大包小云云似是. 鄙家初從先儒說, 朔望參則行之矣.【俗節則廢.】更思之未安, 故方欲改之耳."

략하여 제사라 할 수 없다는 송시열의 예설을 근거로 거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82] 더 나아가 국가의 대·중·소사와 같이 사가의 대·중·소사를 구분하는 예설을 내세운 것은 매우 흥미롭다. 대사는 시제와 연제·상제·담제, 중사는 기제와 묘제, 소사는 속절로 구분하였고 삭망참은 제사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제외하였다.[83]

1720년 숙종상에서 사가의 제사는 국가가 규제하지 않고, 다양한 예설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행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런데 1758년『국조상례보편』에서는 국휼 졸곡 전 기제와 묘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國制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의 차이를 두고 새로운 차원의 예학 논의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공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국휼은 사대부의 가례 실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유교 이념에 철저했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국휼을 통해 군신의 의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예의와 명분에 맞는 가례의 실천을 완수하고자 했다. 혼례의 경우 주자의 「군신복의」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당시 조선과의 제도적 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례와 제례의 경우는 「군신복의」에 규정이 없었으므로 고례와 조선 학자들의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결국 국휼이라는 변례적 상황에서 吉과 凶의 충돌, 존존과 친친의 갈등, 고례와 금례의 차이, 사대부 내부의 차등 규정 등 수많은 변수를 조율하는 독특한 예설 논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국조오례의』 계령조에는 혼인과 제사의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16-17세

82) 朴胤源, 「上宗叔父」,『近齋集』卷18. "廟中俗節朔望參, 論說不一. 或以爲此不入於禁祭條, 無可廢之義, 或以爲禁條雖不言, 而時忌旣停, 則擧大包小, 此二說果孰得耶? 伏未知吾宗家所行如何, 姪則只據先正說, 俗節, 則以燕樂之辰爲嫌, 而欲廢之, 朔望參, 則以其禮最習, 不成爲祭祀, 故行之矣. 近聞人家並與朔望參而廢之者甚多云, 議論歧貳, 行廢各殊, 今則惟當視宗家而決之."

83) 朴胤源, 「上嘐嘐齋金公」,『近齋集』卷4. "大中小祀本指, 國家祀典而言, 而大中小之文, 若欲通看於公私祭祀, 則在私家大祀, 如時祭練祥禫是也. 中祀, 如忌墓祭是也. 小祀, 如俗節是也. 朔望則不可謂之小祀, 遂翁所謂不成祭祀云者, 眞正論也. 旣不成祭祀, 則似無不可行之義."

기 사대부의 예학적 지식에는 어긋나는 측면이 많았다. 먼저 혼인의 경우, 주자의 「군신복의」를 토대로 관품에 따라 차등을 두고자 했다. 그러나 官制의 차이로 인해 「군신복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고, 『국조오례의』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문적인 논의에 그칠 뿐이었다. 제사의 경우, 국가의 제사를 정지하는 상황에서 사가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명분이 중시되었다. 자체적으로 시제를 금지하고 기제와 묘제를 간략히 지내는 등 평소의 行禮와는 차이를 보이고자 했다. 또한 장례 후 이어지는 喪祭 역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예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논의는 국휼을 거행하는 상황에서 사대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行禮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규제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이후 예학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논의의 장이 朝廷으로 확대되고, 국가의 법제로서 재성문화되는 과정이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8세기 『국조상례보편』의 편찬은 사대부의 예학이 국가례에 반영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혼인의 경우 숙종상을 계기로 「군신복의」에 따른 상복 개편이 이루어지고, 허혼의 차등화가 규정되었다. 『국조상례보편』(1752, 1758)에서는 조선의 현실에 맞추어 내용이 수정되었고, 대상·내상·소상·소내상에 따른 구분이 명시되었다. 상례의 경우 장례는 국휼 중이라도 그대로 시행되었는데, 喪祭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였다. 인현왕후상에서 우제를 제외한 喪祭를 졸곡 후로 미루는 송시열-권상하의 노론 예설이 채택되었지만, 『국조상례보편』(1758)의 편찬과정에서 영조는 상례란 효의 실천임을 강조하며 상제를 그대로 허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대부의 예설과 인현왕후상 이후의 전례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기존의 예설이 『국조상례보편』에 명문화하였다. 1720년 숙종상에서 사가의 제사는 국가가 규제하지 않고, 다양한 예설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행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런데 1758년 『국조상례보편』에서는 국휼 졸곡 전 기제와 묘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國制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의 차이를 두고 새로운 차원의 예학 논의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經國大典』, 『景宗修正實錄』, 『光海君日記』,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龜峯集』, 『近齋集』, 『南溪集』, 『鹿門集』, 『大山集』, 『同春堂集』, 『明齋遺稿』, 『文宗實錄』, 『沙溪全書』, 『常變通攷』, 『世宗實錄』, 『宋子大全』,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愼獨齋全書』, 『練藜室記述』, 『英祖實錄』, 『禮記集說』, 『栗谷全書』, 『日省錄』, 『仁祖實錄』, 『正祖實錄』, 『朱子大全』, 『孝宗實錄』.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경인문화사, 2016.

김윤정, 「18세기 端懿嬪의 喪禮와 服制論議」, 『장서각』 제3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26-258면.

_____, 「18세기 本庵 金鍾厚의 『家禮集考』 편찬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제30집, 한국실학학회, 2015, 289-324면.

_____, 「英祖代 貞聖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서울과 역사』 제98호, 서울역사편찬원, 2018, 43-81면.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硏究 :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10.

李倖珪, 「禮訟의 철학적 함의 : 17세기 喪服論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9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8, 173-216면.

_____, 「喪禮 爭點을 통해 본 『國朝喪禮補編』의 志向」, 『동양철학』 제36집, 한국동양철학회, 2011, 87-114면.

李元澤, 「현종대의 복제논쟁과 공사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張東宇, 「茶山 禮學의 硏究 : 『儀禮』 「喪服」과 『喪禮四箋』 「喪期別」의 比較를 中心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硏究』, 서울대 출판부, 1996.

【Abstract】

Variation of Royal Rituals and Family Rituals in the late Chosun Dynasty —Focused on Family Rituals during the Royal Funeral—

Kim, Yun-Jung*

The royal funeral was a variable for family rituals, because people were in sadness. Nevertheless literary noblemen tried to do the right rites. The clause of warning about wedding and worship in *Gukjo-oryeu* was against the knowledge of ritual in 16-17th century chosun. Literary noblemen tried to follow ZhuXi's opinion on mourning dresses of sovereign and subject to grade in marriage and to stop worship before Jolgock of national funeral. But their dispute controversy was a personal, non-official claim.

18th century, the clause of warning about wedding and worship was changed according to literary noblemen's knowledge of ritual. This provision was more specific and refined, and was legalized in *Gukjo-Sangryebopyeon*. It was be said that it was a part of the legal system maintenance project and the practical direction due to the development and accumulation of ritual study.

Keywords: Royal funeral, Clause of warning, ZhuXi's opinion on mourning dresses of sovereign and subject, *Gukjo-oryeui*, *Gukjo-Sangryebopyeon*.

접수일: 2018.03.31 || 심사일: 2018.04.11 || 게재확정일: 2018.05.04

* Research Professor of Yonsei Univ.